

理事會議案

議案番號	會議次數	會議日字
제 호	2015 -	2015. 12. .

1. 議 案 : 구상권관리규정 개정의 건
2. 議決事項 : 구상권관리규정 개정(안)을 별안과 같이 의결함.
3. 提議趣旨 :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표준안 반영하여 소멸시효 관련 조항을 정비, 소멸시효관리 효율화 및 명확화
4. 提議根據 :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제16조 제6호

〈添 附〉 : 구상권관리규정 개정(안)

〈參 考〉 : 이사회 의결 후 확정

【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】

제16조(이사회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~5. (생 략)

6. 재단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7~11.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구상권관리규정 개정(안)

□ 개 정 사 유

-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「재단 보증 및 관리표준화 규정 개정 시행」 (보증 2015-31728, 2015.11.18.) 내용을 반영, 소멸시효 관리기준 조항 정비를 통해 소멸시효관리 효율화 및 명확화

□ 주요 개정내용

-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면책이 확정된 채무관계자에 대한 소멸시효 관리기준 명확화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제15조(시효 관리 예외) 제1항 제3호 삭제 및 제4항 신설	○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확정으로 인하여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○ <u>(신 설)</u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삭 제)</u></p> <p>④ 「<u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관리 업무를 생략한다. 이 경우 해당 채무관계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일에 자동으로 완성한다.</p>

- 구상실익 없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전결사항을 하부 위임하여 관리업무 효율화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제15조(시효 관리의 예외) 제1항 제2호	○ 구상실익이 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고, 생활정도, 생계수단, 소득수준 및 기타 제반여건으로 보아 채무 상환의 가능성이 없다고 <u>이사회가</u> 인정하는 경우	○ 구상실익이 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고, 생활정도, 생계수단, 소득수준 및 기타 제반여건으로 보아 채무 상환의 가능성이 없다고 <u>부점장이</u> 인정하는 경우

□ 시 행 일

-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] 구상권관리규정 新·舊 조문 대비표 1부. 끝.

新 · 舊 條 文 對 比 表

현 행	개 정 (안)
구상권관리규정	구상권관리규정
제1장 총칙	제1장 총칙
제1조 ~ 제7조 -- (기재 생략) --	제1조 ~ 제7조 -- (현행과 같음) --
제2장 구상권의 보전	제2장 구상권의 보전
제8조 ~ 제14조 -- (기재 생략) --	제8조 ~ 제14조 -- (현행과 같음) --
제15조 ① -- (기재 생략) --	제15조 ① -- (현행과 같음) --
1. -- (기재 생략) --	1. -- (현행과 같음) --
2. 구상실익이 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고, 생활정도, 생계수단, 소득수준 및 기타 제반 여건으로 보아 채무상환의 가능성이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	2. 구상실익이 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고, 생활정도, 생계수단, 소득수준 및 기타 제반 여건으로 보아 채무상환의 가능성이 없다고 부접장이 인정하는 경우
3.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확정으로 인하여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	3. (삭 제)
②~③ -- (기재 생략) --	②~③ -- (기재 생략) --
④ (신 설)	④ 「 <u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채무 관계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관리 업무를 생략한다. 이 경우 해당 채무관계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소멸 시효 기일에 자동으로 완성한다.
제16조 -- (기재 생략) --	제16조 -- (현행과 같음) --

현 행	개 정 (안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~제10장</p> <p>제17조 ~ 제89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시 행 일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 (신 설) --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~제10장</p> <p>제17조 ~ 제89조 -- (현행과 같음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19)</p> <p><u>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